# 안전보건관리규정

2022. 10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5조 근로자의 책무

제6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7조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제8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

#### 제2장 안전 · 보건 관리 조직 및 직무

제9조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소속·업무분장

제10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1조 관리감독자

제12조 안전관리자

제13조 보건관리자

제14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

제15조 산업보건의

제16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7조 선임에 관한 사항

제1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0조 작업지휘자 배치

#### 제3장 안전 · 보건교육

제21조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22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3조 교교육담당자

제24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제2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 제4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제27조 안전·보건진단

제28조 유해·위험 기계 등의 방호조치

제29조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검사

제30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의 제한

제31조 작업중지

제32조 안전수칙·안전표지의 종류 및 게시·준수

제33조 그 밖의 안전관리

# 제5장 보건관리

제34조 건강진단

제35조 건강진단의 종류

제36조 건강진단의 시기

제37조 건강진단의 항목

제38조 진단결과의 조치

제39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제40조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제41조 작업환경측정의 시기

제42조 작업환경측정의 조치

제43조 유해물질의 취급

제44조 명칭 등의 게시

제45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46조 보호구 등의 지급

제47조 보호구의 관리

제48조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

제49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제50조 보건수칙·보건표지의 종류 및 게시·준수

제51조 그 밖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52조 산업재해·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제53조 긴급조치

제54조 비상연락망

제55조 산업재해·사고 조사 및 보고

제56조 산업재해·사고 분석 및 대책

제57조 산업재해·사고 발생의 기록 및 관리

#### 제7장 위험성평가

제58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59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제60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제61조 위험성평가의 시기

제62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제63조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 제8장 상·벌

제64조 표창

제65조 징계

제66조 상·벌 평가 기준 등

# 제9장 보칙

제67조 승인 및 협의

제68조 서류의 보존

제69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제70조 규정 제정 및 개정 등

이 규정은 2022. 06. 14 부로 시행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 해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2 사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중대재해

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시민재해

시설물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5. 작업 환경 측정

작업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 근로기준법 제 2조(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8. 근로자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9.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0. 안전보건표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 기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임직원에 적용하며, 협력업체 직원과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대학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시민과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건
-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것
- 5.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것
- 6.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것
-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할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제5조(근로자의 책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 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3.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지도와 지원
  - 4. 작업환경측정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⑦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한다.
-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 ⑨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 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⑩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1(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1. 작업의 시작 시간
  -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 4. 작업장에서의 법 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의2(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 가. 건설업
- 나. 제조업
- 다. 토사석 광업
-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 ②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 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 작업
  -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 1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 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제7조의3(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 가. 건설업
  -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제8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임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임직원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대표는「산업안전보건법」제35조 각 호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절차를 작성하여 임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배포하여야 하며,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1년 이내로 개정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 및 직무

제9조(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소속·업무 분장) ① 법상 회사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라인(계선)조직과 스탭(참모)조직 및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 구분한다.

- ② 라인(계선)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를 둔다.
- ③ 스탭(참모)조직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둔다.
- ④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자체 소방대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⑤ 소속은 평상시와 같이 각 공정 업무를 담당하며,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실시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다음 각 호의 직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해당 직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되 관리책임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소속 임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 3.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7.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사업주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5. 사업장 내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6.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의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7.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8.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9. 직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등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사업주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 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6.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8. 작업장 내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9.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의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10.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1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12. 직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사업주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③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등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1. 건강관리실 : 임직원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 제14조(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사업주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관리책임자 및 사업주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교직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산업보건의로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교직원의 건강보호 조치
  - 2. 임직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3. 그 밖에 임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 제16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야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로 겸직하게 하여 임직원과 수

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 3.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② 사업주는 총괄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해당 직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되 총괄책임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하며,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선임에 관한 사항) ① 회사 내 안전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다.

- ② 회사 내 보건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법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다.
- ③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총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3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다.

제19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 1.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감독 참여
  - 2.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
  - 3.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5. 작업환경측정, 임직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임직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7. 임직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8.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9.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직무

제20조(작업지휘자 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 7. 터널굴착작업
-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 9. 채석작업
-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1조(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임직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임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임직원을 사용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사업주가 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과 같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다.

제23조(교육담당자) ①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교육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24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총 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한 직무교육대학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제4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7조(안전·보건진단) 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 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제출의 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으로 대신한다.
- ③ 임직원 및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유해·위험 기계 등의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 조절 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④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와 같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검사)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이하 "유해·위험 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고시」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 기계 등의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 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산업 안전보건법」제93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사업주는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유해·위험 기계 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 기계 등(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 등
- 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의 제한) ①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의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해당 작업 책임자를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임직원은 위험물질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화기 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1조(작업중지)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임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안전수칙·안전표지의 종류 및 게시·준수)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수칙·안전표지를 제정하여야 하며, 안전표지의 종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와 같다.

②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임직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수칙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임직원 및 관련자가 이를 숙지 및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그 밖의 안전관리)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하며, 관리감독자는 1일 1회 이상 공정별 현장안전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고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 제5장 보건관리

제34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 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교직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교직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건강진단의 종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건강진단 :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2. 특수건강진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 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교직원
- 나.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 직원
- 3.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직무에 종사할 임직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직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직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실시하는 건강진단
- 5. 임시건강진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임직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6조(건강진단의 시기)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3의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4의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 ③ 사업주는 제31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을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직무에 임직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건강진단 실시부서에 해당 임직원이 담당할 직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 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임직원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배치전건강진단
  - 2.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 3.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 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임직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건강진단의 항목)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 3. 체중·시력 및 청력
-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 5. 혈청 GOT 및 GTP, 감마 GTP 및 총콜레스테롤
-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GTP 검사는「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 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 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 강진단의 검사항목과 같다.
- ⑤ 제4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교직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임직원의 노출 정도,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①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하여야 한다.
- 제38조(진단결과의 조치)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해당 임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직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임직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개인표 전산 입력 자료를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이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정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 취급 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9조(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40조(작업환경측정의 방법)** 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을 「산업안전보건법」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 1. 작업환경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이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임직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참여시켜야 한다.
-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임직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할 것
- 4. 작업환경측정 부서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대학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41조(작업환경측정의 시기)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대학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대학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대학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③ 작업환경측정의 시기는 전회(前回)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간격을 두어야 한다.
  - 1. 제37조 제1항에 따라 측정 횟수가 6개월에 1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 2.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 횟수가 3개월에 1회 이상인 경우 45일 이상
  - 3. 제37조 제2항에 따라 측정 횟수가 1년에 1회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 제42조(작업환경측정의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부서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유해물질의 취급)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직무에 교직원을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설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임직원에게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임직원을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주는 유해물질의 관리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명칭 등의 게시)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 3. 취급상의 주의사항
-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5. 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

**제4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물리적·화학적 특성
-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 3. 취급상의 주의사항
-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46조(보호구 등의 지급) ①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장해예방에 적절한 보호구 또는 보호복 등을 구비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호구 등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급된 보호구 또는 보호복 등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47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8조(전용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당 임직원이 건강을 회복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직무 또는 해당 직무로 인하여 교직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직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보건수칙·보건표지의 종류 및 게시·준수)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보건수칙·보건표지를 제정하여야 하며, 보건표지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와 같다.
- ②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임직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보건수칙 및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임직원 및 관련자가 이를 숙지 및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그 밖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① 보건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 ② 보건관리자는 1항의 보건기준을 기초로 작업자의 건강상 특히 필요한 곳에는 보건수칙을 제정하여 부착 하여야 한다.
- ③ 보건수칙은 관계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작업자는 보건수칙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52조(산업재해·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산업재해·사고 발생 시 해당 작업장의 직속 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재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관리책임자 및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 ② 응급실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동용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함.
- ③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4조(비상연락망) 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제55조(산업재해·사고 조사 및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54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 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제56조(산업재해·사고 분석 및 대책)** ① 안전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발생한 산업재해·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관리책임자 및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전년도 산업재해·사고 발생 현황의 원인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 및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7조(산업재해·사고 발생의 기록 및 관리) 사업주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사업장의 개요 및 해당 임직원의 인적사항
  -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제7장 위험성평가

- 제58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 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9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학 건
  -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당 임직원을 참여하게 할 것
  -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외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 시한 것으로 본다.
  -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 2.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 4.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제60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2. 해당 임직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제61조(위험성평가의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1.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인)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임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등
- 제62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사업주는「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2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임직원의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임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 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 3.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3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
-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장 상·벌

제64조(표창)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작업반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안전보건 강조 기간 행사중에 표창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한다.

- ② 표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 2. 안전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65조(징계) ① 법과 법이 정한 명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 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자.
  -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66조(상·벌 평가 기준 등) ① 표창 또는 징계 요구 시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손실 금액
- 2. 안전 진단 결과표 및 시정 실적
- 3. 안전수칙 실천 상태, 교육 및 안전 활동
- 4. 직원의 참여 의식 및 이행 상태
- 5.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사내 상벌 규정에 따른다.

#### 제9장 보칙

제67조(승인 및 협의) ① 각 연구소에서 유해·위험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안전관리자를 경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해야 한다.

- 1.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 2. 전기작업
- 3. 소방 및 안전시설과 장치의 해체 또는 기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작업 등
- ② 생산부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관계 법규상

적절성 여부를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 1. 안전담당자 및 작업장 안전수칙 변경 시
- 2.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발주 전
- 3. 건물 또는 생산시설의 신설, 증설, 개수 시

제68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 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한다.
-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 야 한다.
-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9조(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관련 타 법률에 의한 방화 관리규정 및 전기보완 규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70조(규정 제정 및 개정 등) ① 본 규정 제정 및 개정은 사유 발생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동 위원회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사내방송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② 회사 내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 ③ 본 규정은 사업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전 직원이 알게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타 이 규정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규정(2019.9.자 시행)」은 폐지한다.